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,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항공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94호, 2023. 4. 18. 공포, 2023. 10. 19. 시행)됨에 따라,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되었던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업무를 국토교통부 업무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 심의사항, 협의체 위원회 구성, 위원의 임기 등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(안 제9조의2)
- 나. 법에서 위임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하여 무상제공 근거 마련(안 제20조의2)
- 다. 항공교통흐름관리 권한을 실제 흐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(안 제26조

제2항제5호의2)

라.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최초의 감항승인 검사업무를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도록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업무를 조정하고자 함(안 제26조)

마. 국가항행계획 수립·이행 업무 및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 권한을 전문성이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(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4 및 5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협의 예정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제77조의 2제4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(이하 “추진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국가항행계획의 수립,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항공교통관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국가항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협의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제2차관이 된다.

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국방부·기상청·소방청·해양경찰청 및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지

명하는 사람

3. 항공분야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
4.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- ⑤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.
- ⑥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⑦ 추진협의체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연구기관의 장, 단체의 장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⑧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연구, 사전 검토 및 추진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추진협의체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20조의2(항공정보의 무상 제공) 법 제89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외교부
2. 경찰청
3. 소방청
4. 산림청
5. 기상청
6. 해양경찰청
7.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
8. 그 밖에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

제26조제1항제7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

제26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항공기등, 장비품”을 “장비품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4. 법 제77조의2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

4의5.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(이하 “추진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<u>1. 국가항행계획의 수립,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u> <u>2. 항공교통관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국가항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협의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</u> <u>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제2차관이 된다.</u> <u>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u> <u>1. 국방부 · 기상청 · 소방청 · 해</u>

양정찰청 및 국토교통부에서
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나 이
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
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
사람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
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3. 항공분야 전문기관에서 5년
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

4.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
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
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⑤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
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
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
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
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.

⑥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 위
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
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
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
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
한다.

⑦ 추진협의체 위원장은 추진협
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

<신 설>

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연구기관의 장, 단체의 장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⑧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, 사전 검토 및 추진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추진협의체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20조의2(항공정보의 무상 제공)
법 제89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외교부
2. 경찰청
3. 소방청
4. 산림청

제26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(항공기, 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승인,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. 다만, 다음 각 목의 감항승인과 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.

가.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

5. 기상청

6. 해양경찰청

7.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

8. 그 밖에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

제26조(권한 및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-----.

-----.

<삭 제>

나.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
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
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
인

다.·라. (생략)

8. ~ 60. (생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~ 12. (생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,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등,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

<삭제>

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
8. ~ 60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
른 항공교통흐름 관리

6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장비
품 -----

한 법 제24조에 따른 최초의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<u>가.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 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</u> <u>나.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 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 등</u> 다.·라. (생략) 6.·7. (생략) ④ ~ ⑨ (생략)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항공안전기술 원법」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에 위탁한다. 1. ~ 4의3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5.·6. (생략)	----- -----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다.·라. (현행과 같음) 6.·7. (현행과 같음) ④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의3. (현행과 같음) <u>4의4. 법 제77조의2에 따른 국 가항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 한 지원 업무</u> <u>4의5.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 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</u> 5.·6.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255